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 출 자	이계천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2. 04. 13.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제41호
----------	------

발의연월일 : 2022. 04. 13.

대표발의자 : 이계천

공동발의자 : 서 원, 조배식,
최정숙, 박영자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안 제6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103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나. 입법예고 : 2022. 04. 13. ~ 04. 17.(5일간)

□ 규칙안

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직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직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 초과된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한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 의원 외 4명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⑤성명		한 글		⑥생년월일					
			한 자		⑦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근속기간		년	월	⑩정년일	
⑪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직급정년		⑬정년		(세, 년)			
	⑭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p>「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 하</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 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 하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직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의 회 의 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